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 삭제 정비함
-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함(안 제5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의료급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191백만원, 도비 48백만원, 군비 767백만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전부 반영함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별지 서식]

영수필통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납입통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영 수 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의료급여기금 운영
- 나.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767	787	807	827	827	4,015
세출	군비	767	787	807	827	827	4,015

- 산출기초 : 진료비 군비부담금(전체진료비 4퍼센트), 부당이득금 반환금, 예금이자

3. 관련 의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2019년도 군비 767백만원 소요
- 2019년 전체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 191, 도 48, 군 767)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